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4월 2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4월 21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5월 2일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

나.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조례를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와 고지·고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를 통리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제24조)

라.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교 역

-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법」 제정 시행으로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함에 앞서 도로명 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서의 효력발생을 위한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추진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방문고지 업무를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임명된 통리장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 전국적으로 일제 동시에 추진되는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와 관련 방문고지를 담당하게 되는 통리장에게 실비를 보상하여 방문고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 본 사업은 주소체계를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금회 1회로 종료되는 사업이며, 통리장의 고유 업무외의 업무로 판단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업무의 원활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비변상 지급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